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

의안
번호

2017-107

제출일자 : 2017.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지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회칙)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 문: 관광산업과 관광문화에 관한 회원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유지

나. 총 칙: 제1조~제4조

1) 명 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2) 목 적: 서부경남지역의 관광사업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 등

3) 사 업: 관광마케팅 공동전략 수립, 관광상품 개발, 관광설명회 개최 등

다. 회원 및 조직: 제5조~제10조

1) 회 원

가) 서부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 11개 시군의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

(1) 시: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

(2) 군: 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나) 공공기관 등

(1) 당연회원: 한국관광공사 경남권 관할지사장

(2) 추가할 수 있는 회원: 경남도청, 관광학계, 관광업계 대표 인사

2) 회 의

가) 구 분: 정기총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정기총회는 1/4분기 정기회의)

나) 의 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3) 재 정

가) 수 입: 회원 시군별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

나) 회 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운용기준 준용

다) 예산결산

(1) 예 산: 매년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같이 1/4분기 정기회의 의결

(2) 결 산: 다음 연도 1/4분기 정기회의 승인 의결

3. 규약안: 붙임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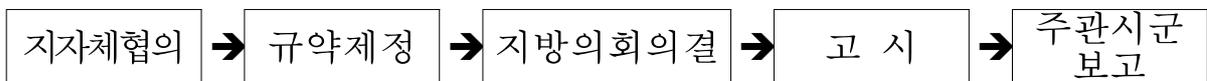
가. 관련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 2)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국민권익위 2016. 10. 31.)

나. 행정협의회 정의 및 설립 절차

- 1) 행정협의회의 정의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체

2) 설립절차



다. 기타사항

- 1) 임의협의체에서 행정협의체로 적법 구성 및 운영
- 2) 시군별 연간 분담금 규모: 10,000천 원 정도

붙 임: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1부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서부경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시·군에 둔다.

제4조(회원) 협회의 회원은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의 관광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실·과를 말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및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둔다.

②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 시·군의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역할)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사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및 재정운용, 회의서류 및 회의록의 작성, 협회 운영에 관한 기록물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 권역 특성화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
3. 국내외 관광·여행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팸투어 시행
4. 국내외 합동 관광설명회 개최
5. 국내외 관광박람회 공동 참가
6. 공동 시티투어사업
7. 기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상호 지원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자 회의를 따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및 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②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 시군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은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협의회의 세입·세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그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세입세출결산안은 그 다음 연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회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하반기 정기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정기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감사의 결산검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 ① 협회회의 설립 목적 실현과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3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은 회원 2분의1 이상의 발의로 의제가 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4조(합의)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